

주택조합 설립(또는 변경, 해산) 인가필증

인가번호			
조 합 명			
대 표 자		생년월일	
사무소 소재지	(전화번호:)		
조합원 수		주용도	

「주택법」 제1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조합 설립(또는 변경, 해산)을 인가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
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